

(앞 면)

사인 연도	: : : : : :	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	법인명							
※관리 번호 - 사업자등록번호 - -										
※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.										
1. 손금산입액 조정										
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		②설정율	③한도액(①×②)							
		10/100								
⑤한도초과액 (④-③)		⑥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		④회사계상액						
		⑦손금불산입계 (⑤+⑥)		⑧손금산입액 (④-⑤-⑥)						
2. 익금산입액 조정										
⑨손금 산입 연도	⑩설 정 액	⑪장부 상준비 금기초 잔액	⑫기 중준비 금환입 액	⑬준비 금부인 액	차감액				⑬계 (⑪-⑫- ⑬)	
					3년 미경과분		3년 경과분			
					⑭투 자 금 액 상 당 액	⑮미 사 용 분	⑯투 자 금 액 상 당 액	⑰기 타 준 비 금		
계										
손금 산입 연도	투자금액 상당액<⑩>중 환입할 금액				<⑮>환입할 금액계 (⑮+⑯)	<⑰>회 사 환 입 액	<⑱>과소환입 액 과다환입액 (△) (⑱-⑰)			
	<⑩>1차 연도	<⑩>2차 연도	<⑩>3차 연도	<⑩>계 (⑩+⑪+⑫)						
계										

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

1. 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2.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특별비용 조정명세서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.
3. <18>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투자금액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분을 <16>투자금액상당액과 <17>기타 준비금으로 구분 기입합니다.
4. <22>투자금액상당액 <16>중 환입할 금액란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<23> 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중 <17>기타 준비금과 <22>투자금액상당액 <16>중 환입할 금액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5. ⑦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<25>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. 다만, 과다환입액 (△)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고, 동 과다환입액중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.
6. <23>환입할 금액계중 <17>기타준비금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